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추정 근거 마련〉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12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2.
3. 회부연월일 : 2025.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적정설비 설치·관리 의무 또는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를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하라는 것이나,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정률 과징금보다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소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매출액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과징금) ① (생략) <u><신설></u>	제21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법 제16조¹⁾는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의 수요·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관리 의무 등)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

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배전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 설치·관리 의무, 배전망관리방침 공개 의무, 불합리한 접속·차단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였음.

또한, 제17조²⁾는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발전된 전력에 대한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출력제어, 접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

그리고, 제21조제1항³⁾은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6조나

너지사업자가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배전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배전망관리방침을 공개하고, 배전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7조(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사업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발전된 전력에 대한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전력거래소와 상호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출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기준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22조제2항⁴⁾은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①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연평균 매출액 또는 연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②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규정함.

그런데, 이처럼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거부 및 거짓 제출도 정액 과징금 대상으로 포함한다면 정액 과징금과 정률 과징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현행법 규정을 위반한 배전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간접적으로 허용하게 될 우려가 있음.

제21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매출액의 산정방법 등)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또는 연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에, 개정안은 배전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도 비슷한 규모를 가진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하여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당초 정액 과징금을 허용한 취지는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최소한의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정액 과징금보다 정률 과징금이 더 무거울 가능성이 있어 의도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⁵⁾로 「개인정보보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을 추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61

5) 구체적인 입법례는 [참고자료] 참조

[참고자료]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추정 입법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9. (생략)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4(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방송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 ⑨ (생략)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27조제1항제3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2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